

2023년 제10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2호 안건: 연수구 송도동 396-11번지(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3. 11. 22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(주)무궁화신탁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				
	지 번	396-11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103,853.64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제3종일반주거지역/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14,936.9652㎡	건폐율	14.29%	층 수 지하 : 2층 지상 : 44층
	주 용 도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구 조	철근콘크리트 구조	건축물 동수 동
	최고높이	129.90m	용적률	182.96%	연면적 합계 287,876.7477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구조)분야	○ 106동의 탄성해석 결과는 풍동실험보고서 105동(대표동) 고유주기 약 3.425sec(1/nx, p.19), 성능기반설계보고서 주요모드 형상비교의 고유주기 2.559sec(p.83), 구조계산서 고유치해석결과의 고유주기 3.639sec(pdf p.103)임. 동적특성이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지 재검토바라며, 필요한 경우, 해당 동에 대해 풍동실험 및 성능기반설계 보완수행 바람. ○ 건축감리 구조협력 업무에 차질없도록 착공 전까지 업무수행자를 선정하여 제출할 것. (원설계 의도가 시공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기술자와 협력 권장) ○ 페데스탈의 수직주근의 상부도 표준갈고리 정착 확보바람. ○ 심의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바람.			
	(토질)분야	○ 조치계획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수행하기 바람.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킴으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